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60
------------	-----

2022년 12월 19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정진술 의원 외 18명

나. 제안일자 : 2022년 10월 17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2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진술 의원)

가. 제안이유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2.1.11.공포, 2022.7.12.시행)되었음
-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및 조성, 점검·유지 보수 의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는바,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27. ~ 2022. 10. 31.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동의

- 금번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권한을 조례에 반영하고, 교통시설물 설치가능, 유지관리 의무조항을 반영하여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교통정책과-36060호('22.12.15.)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개정사항²⁾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정의하고, 시장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조성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반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지난 '22년 1월 보행자 통행이 많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 등에 대한 보행자 보호와 통행권 확보를 위해 법이 개정되어 '22년 7월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음
- 그 동안 서울시는 법 개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³⁾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⁴⁾ 및 제19조의3에 근거하여 보

2) 법률 제18743호('22.1.11. 일부개정, '22.7.12. 시행)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시설)

②제1항에 따른 기본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였고, 현재 100개소의 보행자우선도로5)가 운영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를 볼 때 동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또한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는 법 제2조제3호6)를 인용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정의하는 것으로 법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동 개정조례안 제17조의2는 시장이 ①보행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고, ②보행자우선도로에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③ 보행자우선도로의 점검, 유지·보수 및 관리대장 작성·보관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 제17조의27), 제17조의38), 제19조9)에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5) 보행자우선도로 현황 : 총100개소

자치구	개소	자치구	개소	자치구	개소	자치구	개소
강남구	3	구로구	7	서대문구	7	용산구	3
강동구	7	금천구	6	성동구	3	은평구	7
강북구	3	노원구	3	성북구	4	종로구	6
강서구	8	도봉구	3	송파구	4	중랑구	3
관악구	1	동대문구	1	양천구	2		
광진구	10	동작구	3	영등포구	6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무리가 없어 보임

- 다만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¹⁰⁾에서 자치법규에 상위법령 내용을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관련법령 개정시 불필요하게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입법경제적 측면과 자치법규의 해석·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양토록 하고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임

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2. 속도저감시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할 때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③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① 특별시장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및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0)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14

“자치법규에 법령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하게 되면 법령이 개정될 때마나 불필요하게 자치법규도 개정해야 하고 자치법규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자치법규에 상위법령 내용을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자치법규의 해석·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치법규에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규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행자우선도로”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구성 등)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2. 속도저감시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4.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5. 장애인 안전시설
6. 조경시설

7. 편의시설

8. 조명시설

9.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법 제17조의3 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보행자우선도로”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u></p> <p><u>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구성 등)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u></p> <p><u>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u></p> <p><u>2. 속도저감시설</u></p> <p><u>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u></p> <p><u>4.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u></p> <p><u>5. 장애인 안전시설</u></p>

6. 조경시설

7. 편의시설

8. 조명시설

9.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서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
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
된 시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 매년 관리 실
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시
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
관하여야 한다.